

	편입학 운영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3. 3. 4.
		최종개정일자	2017. 1. 16.
		담당부서	학사지원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“대학”이라 한다)학칙 제16조에 의한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편입학 시기) 편입학은 제2학년 1학기 개강 전 정해진 기간 내에 편입학 원서를 입학학생처로 제출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한다.<개정2017.1.16>

제3조(모집단위) ①각 학부(과)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계열에 관계없이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한다.

제4조(편입학 자격) ①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및 4년제 대학 1년 이상 수료한 자로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 된 자
※ 전문대학 재학(휴학)중인 자는 편입학 지원이 불가하며, 제적(자퇴)생은 제적(자퇴)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된 자<개정 2017.1.16>

②<삭제 2017.1.16>

③<삭제 2017.1.16>

④외국인 학생

제5조(구비서류) 편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편입학 지원서와 전형료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해당 학력증명서(졸업, 졸업예정, 수료, 성적)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2. <삭제 2017.1.16>
3. 편입학 전형 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4.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학점인정) 편입생의 성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학력조회) ①편입학 자의 전적 대학(교)에 학력 및 성적, 징계사항을 조회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.

②조회 후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재학 중이라도 입학を 취소한다.

제8조(관련문서) 관련문서는 매 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한다.

제9조(기타) 폐교된 대학 학생의 규정은 교육부 특별 편입학 지침에 의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